

##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1. 5. 27.(금) 16: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2011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2011-33-112)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6개 수도권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재허가 대상 : 6개 사업자

사업자명	대표자	허가유효기간	방송구역
한국방송공사	김인규	'11. 12. 3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주)문화방송	김재철	'11. 12. 31.	
(주)에스비에스	우원길	'11. 12. 31.	
(주)와이티엔디엠비	배석규	'11. 12. 31.	
한국디엠비(주)	김경선	'11. 12. 31.	
유원미디어(주)	주상균·박경수	'11. 12. 31.	

②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8인 내외)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분야 등을 포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위촉함
-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함

③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가지표	배 점
I. 방송평가	계 량	400
II. 운용실적 및 사업계획	계량·비계량	600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비계량	170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80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비계량	50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70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비계량	170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비계량	40
7. 허가 또는 승인 조건 및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비계량	20
8.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계 량	감점
<b>합 계</b>		1,000

④ 재허가 여부 결정

- 심사 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하며,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함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여 해당 항목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거나,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2) 2011년도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2011-33-113)

- o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 2012년 1월까지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씨앤엠우리케이블티브이 등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

o 주요 내용

① 재허가 심사대상 : 4개 사업자

MSO	사업자명	허가유효기간	방송구역
티브로드	(주)티브로드홀딩스중부방송	2011. 11. 11.	충남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씨앤엠	(주)씨앤엠우리케이블티브이	2012. 01. 27.	경기 의정부시, 양주군, 동두천시, 포천군, 연천군
개별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주)	2011. 12. 19.	울산광역시
	(주)영서방송	2012. 01. 19.	강원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②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위원 또는 심사시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9인 이내)
- 방송, 방송평가,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의 분야 포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위촉
-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③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

심사항목 및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 점
1.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계량	400
2.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비계량	10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120
4.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비계량	100
5.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60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비계량	120
7.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이행여부	비계량	50
8. 허가 또는 승인 조건 및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비계량	50
9.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계량	감점처리
<b>합 계</b>		<b>1,000</b>

④ 재허가 여부 결정

- 재허가 심사결과 65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하되, 특정항목의 평가점수가 40%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 조건 부과 가능
- 650점 미만인 경우 재허가를 거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

사. 보고사항

1) 2010년도 SO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

- o '08 ~ '10년 동안 재허가를 받은 95개 SO의 재허가 조건\* 준수여부 관련 실태점검 결과를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

※ 재허가 조건 :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할 것

o 주요 내용

- ① (조건 이행여부) 전체 95개 SO 모두 '10년도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여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였음

- '10년도 95개 SO가 지급한 총 PP 프로그램 사용료는 3,009억원으로 전체 방송수신료 1조1,571억원의 26.0%를 차지

- ② (사용료 배분비율) 전년 대비 PP 프로그램 사용료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기본채널의 비중은 감소하고 유료채널 및 VOD의 비중은 확대

- 전체 PP 프로그램 사용료 중 기본채널에 2,269억원(75.4%), 유료채널에 155억원(5.2%), VOD에 585억원(19.4%) 배분됨

※ 기본채널은 묶음상품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채널, 유료채널은 묶음상품과 별도로 수신료를 지불하는 채널, VOD는 주문형 비디오를 의미

2)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인정기준(안) 고시에 관한 사항

- o 한-EU FTA 잠정발효('11. 7. 1)에 대비하여 마련된 방송프로그램 국내제작 인정기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및 제도 운영방안을 권병욱 편성평가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음.

o 주요 내용

① 국내제작 인정기준

① 국내제작 인정에 필요한 국내자본 투자비율은 최소 30%로 설정

- 공동제작 다큐멘터리나 외주 드라마의 경우 일본, 중국 등 외국자본 유치가 필요하다는 제작사측 의견과 기 체결된 공동제작협정을 감안
- 국내자본의 범위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연인과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을 국내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을 포함(방송법 시행령 제14조)

② 기획 및 제작형태와 인력의 구성 기준으로 제작의 전 과정을 제작요소에 따라 기획·연출, 연기자·출연자, 제작 작업으로 3분하여 총 21점으로 구성

- 제작작업(4점) 보다 기획·연출(9점)과 연기자·출연자(8점)의 점수 비중을 높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전 과정의 주도적 역할 여부에 비중을 두어 평가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점수(안) >

기획·연출(9점)			연기자·출연자(8점)		제작 작업(4점)				합계 (21점)
기획·제작 (3)	시나리오 (3)	연출 (3)	주연 (4)	조연 및 단역(4)	영상 (1)	음향 (1)	미술·CG (1)	편집 (1)	

※ 다큐멘터리 등의 경우는 제1성우 또는 나레이터를 주연으로, 제2성우 또는 나레이터를 조연으로 간주

- ③ 투자재원 기준으로 국내자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기획 및 제작형태, 인력 기준으로 총 21점 중 60% 이상(13점) 획득시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
- ④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중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국내제작으로 인정되는 방송프로그램
- ⑤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스포츠 경기 중 우리나라 팀이나 선수가 출전하고, 우리말로 해설과 중계를 하는 방송프로그램
  - 외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제작이 어렵고, 중계방송시 국내 시청자를 위해 우리말 중계·해설을 덧붙이는 점을 감안

② 인정제도 운영

- ① 외국자본의 투자가 있거나 외국인이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공동제작의 경우로 한정하여 별도 인정 신청
  - 이외,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있는 경우, 직권 등에 의해서도 국내제작 인정여부를 결정

② 국내제작 인정 여부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방송사업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련 학계, 기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9인으로 구성·운영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일시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

**6. 폐 회 (17:05)**